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셋째자녀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을 규정하였으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자 셋째자녀 이상 건강보험 지원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입 안 자	과 장	전 석 재
	담 당	임 명 섭
	담 당 자	나 혜 미 (480-4073)